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 월 19 일

여 수 시 장

2023. 9. 19. 

여수시 조례 제1960호

붙임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60호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여수시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라 한”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이동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위원 : 해당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여수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여수시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아동·청소년 전문가 및 시설의 장

마. 교육자, 아동·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바. 보호자 대표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임된”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임기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를 지도위원으로”를 “을 지도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를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현행 15조를 제14조로 이동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앞에 “제4장 아동급식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생략)

③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시 지도협의회장, 아동·청소년 전문가, 아동·청소년 시설의 장, 교육자, 아동·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위원 : 해당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 여수시의회 의원
 - 나. 여수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여수시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라. 아동·청소년 전문가 및 시설의 장
 - 마. 교육자, 아동·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바. 보호자 대표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 | |
|---|---|
| <p><u>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u></p> <p>② (생략)</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생략)</p> <p>제7조(출석발언) (생략)</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장 청소년 지도위원</p> <p>제9조(청소년 지도위원) (생략)</p> <p>제10조(임무) ① ~ ② (생략)</p> <p>제11조(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및 결격사유)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 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 <p>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8조(수당 등)에 따라</p> <p>제11조(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및 결격사유) ① 각 호에 사람을</p> <p>2. 사람</p> <p>3. 사람</p> <p>4. 사람</p> <p>② 사람은</p> |
|---|---|

| | |
|--|--|
| <p>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p> <p>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p> <p>3.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p> | <p>1. 금고 이상의 사람</p> <p>2. 사람</p> <p>3 사람</p> |
| <p>제12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u>10인내외</u>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p> | <p>제12조(지도위원의 수) 10명 내외로 그 밖에</p> |
| <p>제13조(임기) (생략)</p> | <p>제14조 <삭제></p> |
| <p>제14조 (삭제 2014. 8. 13)</p> <p>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u>지원을 사업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u></p> | <p>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원을 할 수 있다.</p> |
| <p>제4장 아동급식 위원회</p> <p>제16조(아동급식 위원회) ①시장이 아동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p>(제4장 아동급식 위원회) <삭제> (제16조) ① ~ ② <삭제></p> |
|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아동급식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학부모, 교사, 시,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관련 담당이 간사가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개최를 할 수 있다.

(제17조) ① ~ ⑤ <삭제>

(제18조) ① ~ ② <삭제>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나 18세이상인 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20조(지원대상자 선정)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에서 정리·분석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을 결정한다.

제21조(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